

□ **주요 경과**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개정(‘21.3.23.) 후 3년 유예
 - **(주요 내용)** 초·중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시 경기대회 참가 제한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설(‘22.7.6.)
 - **(주요 내용)** 참가제한 경기 대회 및 기간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 시행(‘24.3.24.) 및 적용(‘24.9.1.)
-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발의(‘24.7~8월) : 강득구·서지영·임오경의원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202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1학기 기준**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률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률
초	682	3.0%	488	1.9%
중	4,211	15.9%	3,187	11.5%
고	2,149	11.2%	1,682	7.9%
계	7,042	10.3%	5,357	7.1%

※ **3,675** : '24년 9.1.~'25년 2.28.까지(6개월 간) 대회 출전 제한 초·중 학생선수 수